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방 송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임혜숙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「방송법」이 개정(제18732호, 7. 12. 시행)됨에 따라 변경된 시행규칙 및 별지 자구 수정

3. 주요내용

- 기술결합서비스 “승인” → “신고” 자구 수정 등
 - 시행규칙 및 별지(19호2 및 19호3)의 기술결합서비스 “승인”을 “신고”로 자구 수정
 - 당초 시행규칙에 포함되었던 “제공계획서 포함 내용”을 “시행령 제13조의4(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) 제①항”으로 상향 입법
- “이용요금 승인” → “이용약관 신고”로 자구 수정 등
 - 시행규칙의 “이용요금 승인”을 “이용약관 신고”로 자구 수정
 - 이용약관 신고 처리기한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
-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·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
 -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및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“즉시”에서 “7일이 내”로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

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의 제목 “(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 신청)”을 “(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)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의2(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)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 서비스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법 제7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”를 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하려는 경우에는”으로, “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청서”를 “이용약관신고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77조제1항”을 “법 제77조제4항”으로, “변경승인을”을 “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을”로, “별지 제32호서식”을 “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”으로, “변경승인신청서”를 “승인신청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 신청) 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승인·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과 같다. ②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방송의 공적 책임·공익성의 실현방법 2. 해당 방송사업에 미치는 영향 3.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4.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5. 자금조달 및 서비스 운영계획 6.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. 시청자의 권익 보호 계획	제7조의2(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)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.
제17조(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등) ① 유료방송을 행하려는 방송사업자·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	제17조(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(변경 신고를 포함한다)를 하려는 경우에는 -----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
서식에 따른 <u>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청서에 이용약관 및 이용요금 산출명세서를</u>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유료방송을 행하려는 방송사업자·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<u>변경승인</u>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<u>별지 제32호서식</u>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<u>변경승인신청서</u>에 이용약관 및 <u>변경요금 산출명세서를</u>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<u>이용약관 신고(변경신고)</u>서는 <u>별지 제33호서식</u>과 같다.	<u>이용약관신고서에 이용약관을</u> ② <u>법 제77조제4항</u> <u>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을</u> <u>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</u> <u>승인신청서</u> <u>이용요금</u> <삭 제>																
□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(자구 수정) <table border="1"> <tr> <th>별 지</th><th>현 행</th></tr> <tr> <td>제19호의2(기술결합서비스 승인·재승인 신청서)</td><td>승인·재승인</td></tr> <tr> <td>제19호의3(기술결합서비스 중지·중단 신청서)</td><td>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연월일</td></tr> <tr> <td>제26호(최다액출자자 등 변</td><td>처리기간</td></tr> </table>	별 지	현 행	제19호의2(기술결합서비스 승인·재승인 신청서)	승인·재승인	제19호의3(기술결합서비스 중지·중단 신청서)	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연월일	제26호(최다액출자자 등 변	처리기간	□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(자구 수정) <table border="1"> <tr> <th>별 지</th><th>개정안</th></tr> <tr> <td>제19호의2(기술결합서비스 신고서)</td><td>신고</td></tr> <tr> <td>제19호의3(기술결합서비스 중지·중단 신청서)</td><td>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연월일</td></tr> <tr> <td>제26호(최다액출자자 등 변</td><td>처리기간 7일</td></tr> </table>	별 지	개정안	제19호의2(기술결합서비스 신고서)	신고	제19호의3(기술결합서비스 중지·중단 신청서)	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연월일	제26호(최다액출자자 등 변	처리기간 7일
별 지	현 행																
제19호의2(기술결합서비스 승인·재승인 신청서)	승인·재승인																
제19호의3(기술결합서비스 중지·중단 신청서)	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연월일																
제26호(최다액출자자 등 변	처리기간																
별 지	개정안																
제19호의2(기술결합서비스 신고서)	신고																
제19호의3(기술결합서비스 중지·중단 신청서)	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연월일																
제26호(최다액출자자 등 변	처리기간 7일																

현행		개정안	
경 승인·신고 신청서)	즉시	경 승인·신고 신청서)	
제32호(유료방송 이용요금 (변경)승인신청서)	별지 제32호 「방송법」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방송 이용요금 (변경)승인을 신청합니다.	제33호(유료방송 이용요금 (변경)승인신청서)	별지 제33호 「방송법」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방송 이용요금 (변경)승인을 신청합니다.
제33호(이용약관신고(변경신고)서)	별지 제33호 처리기간 5일 「방송법」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방송의 이용약관을 (변경)신고합니다.	제32호(이용약관신고(변경 신고)서)	별지 제32호 처리기간 7일 「방송법」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방송의 이용약관을 (변경)신고합니다.
제48호(폐업·휴업 신고서)	처리기간 즉시	제48호(폐업·휴업 신고서)	처리기간 7일